

과업지시서

사 업 명 : 2026년 산림복지 목재인테리어 지원사업 감리 용역
주관기관 : 목재문화진흥회

2026. 8.

소 속	전화번호	팩스번호
문화사업실	02-3463-9634	02-3463-9631

목 차

I. 총칙

1. 과업의 명칭	3
2. 과업의 목적	3
3. 과업의 개요	3
4. 적용 범위 및 기준	3
5. 감리대상 현장	4

II. 감리원의 배치 및 책임

1.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	6
2. 감리원의 업무자세 및 책임	6

III. 세부 과업 수행지침

1. 공사 착수 전 감리 업무	7
2. 공사 시행 단계 감리 업무	7
3. 기시공 현장에 대한 사후 통제 및 특별지침	8
4. 준공 단계 감리 업무	8

IV. 보고 체계 및 성과품 제출

1. 수시 및 정기 보고	9
2. 최종 성과품 제출	9
3. 문서의 보관 및 보안	9

I 총칙

1. 과업의 명칭

-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산림복지 목재인테리어 지원사업 감리용역이라 칭하며, 이하 목재문화진흥회를 발주기관이라 하고, 본 감리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자를 과업수행자 또는 감리자라 칭한다.

2. 과업의 목적

- 본 과업은 전국 56개소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2026년 산림복지 목재인테리어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, 관련 법령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과정의 품질, 공정, 안전, 환경 관리를 철저히 감독함에 그 목적이 있다. 특히, 국산 목재 및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문적인 감리를 수행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공 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.

3. 과업의 개요

- 가. 감리 대상 : 동두천요양원 등 전국 56개소(17개 시공 권역)
- 나. 과업 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
- 다. 총 용역비 : 금 115,178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- 라. 과업 범위 : 대상시설 건축 및 인테리어 시공 전반에 대한 현장 감리, 관급자재 및 국산 목재 검수,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, 준공검사 및 정산 지원 등 일체

4. 적용 법규 및 기준

- 가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(용역계약 일반조건 등)
- 나. 건축법, 건축사법, 건설기술 진흥법,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축 및 건설 관련 법령
- 다. 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
- 라.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산 목재 인증 관련 규정
- 마.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(방염 기준 등)
- 바. 기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지침 및 과업지시서

5. 감리대상 현장

구분	수혜기관명	세부주소
1	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	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
2	서울농학교	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3 본관동
3	미추홀노인복지관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37번길 17
4	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	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418번길 13 3층
5	동두천요양원	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3208번길 43-15
6	서울정신요양원	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258번길 122
7	향림원 품안의 집	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55-40
8	골든벨리	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중부대로 2806-1
9	우리노인전문요양원	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중부대로 2806-3
10	양지어린이집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로105번길 40
11	세광정신요양원	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용천로71번길 54
12	태백노인전문요양원	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고요숲길 15
13	예다움	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-25
14	보리수동산	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좌연4길 37-10
15	셋별어린이집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32번길 29 1층
16	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	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125번길 4-1
17	여래원	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28길 8-18
18	장선종합사회복지관	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14번길 45
19	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	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230번길 18
20	동삼종합사회복지관	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30 2층
21	성애원	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남명리1길 34-48
22	가시리마을회(경로당)	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기사길 217
23	가시리마을회(마을회관)	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기사1길 4
24	매정2리경로당	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샛터길 3
25	영덕읍 우곡리마을회관	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서원길 21-2
26	화수2리경로당	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미동길 15
27	화천3리경로당	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천길 373
28	두천1리마을회관	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두천리 250-1

구분	수혜기관명	세부주소
29	성심복지재단	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안길 101-5
30	다정아동일시보호시설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217-26
31	명재어린이집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36-3
32	전주종합사회복지관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10
33	i와숲어린이집	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군익로6길 10
34	나무와새어린이집	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468-1
35	이리성애모자원	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봉로6길 29
36	행원어린이집	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석암로 100
37	군산종합사회복지관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로 59
38	남원사회복지관	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-9
39	관촌원광수양원	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공덕1길 39
40	해림종합복지관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금성면 새덕굴길 317
41	소영어린이집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로 108 108
42	화니어린이집	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내영산1길 11-29
43	하남종합사회복지관	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12
44	금호종합사회복지관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운천로32번길 23
45	신영어린이집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염화로 56
46	쌍봉종합사회복지관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학동서4길 58-20
47	은빛마을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366
48	성원어린이집	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칠북로 21-33
49	봉양어린이집	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27
50	공립아이사랑어린이집	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장뜰로 110
51	상록원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71-1
52	느루(장애인보호작업장)	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50번길 16 1층
53	대전종합사회복지관	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동로15번길 20
54	마음편한집	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행암길 44-67
55	쌍용종합사회복지관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57
56	원북어린이집	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595-9

II 감리원의 배치 및 책임

1.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

- 가. 과업수행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적합한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책임감리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나. 전국 56개소 현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, 책임감리원의 총괄 하에 현장별 공정 일정에 맞추어 권역별 보조감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현장 감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다. 발주기관은 투입된 감리원이 업무 수행 능력 부족, 불성실 등의 사유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2. 감리원의 업무자세 및 책임

- 가. 감리원은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로서, 제반 법규 및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나.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, 시방서, 안전관리계획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, 시공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적발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다. 감리원의 고의, 과실,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부실시공, 재해 발생, 발주기관의 금전적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,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.

1. 공사 착수 전 감리 업무

- 가. 설계도서 검토 : 감리원은 시공 전 실시설계 도면, 시방서, 산출내역서, 수량산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, 오류, 현장 여건과의 상이점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나. 착공계 및 시공계획 검토 : 시공자가 제출한 착공계, 현장대리인계, 예정 공정표,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,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.
- 다. 품질관리계획 확인 : 사용될 자재의 규격, 국산 목재 사용 여부, 방염 처리 계획 등이 발주기관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전 점검하여야 한다.

2. 공사 시행 단계 감리 업무

- 가. 현장 방문 및 시공 확인 : 감리원은 수혜기관별 최소 3회 이상(착수, 주요 공정, 마감 등) 현장에 방문하여 감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 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. 현장 방문 시 도면과 동일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,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매몰 부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공 과정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도 및 확인하여야 한다.
- 나. 자재 승인 및 검수 : 본 사업은 친환경 및 국산 목재 활용이 핵심이므로,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목재 및 주요 마감재에 대하여 규격서와 일치하는지 철저히 검수하여야 한다. 특히 국산 목재 원산지 증명서, 방염필증, 각종 친환경 인증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고, 불합격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.
- 다. 공정 관리 :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실제 공정률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, 부진 공정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에게 만회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라. 안전 및 환경 관리 : 현장 작업자의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현황, 화재 예방을 위한 위험물 보관 상태,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 및 처리되는지 그 증빙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마. 설계변경 검토 : 현장 여건의 변동,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,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요청서의 기술적 타당성과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3. 기시공 현장에 대한 사후 통제 및 특별지침

- 가. 본 감리용역의 계약 체결 시점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선착공되어 시공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현장에 대하여, 감리원은 투입 즉시 시공자로부터 기존의 작업 일지, 자재 반입 송장, 시공 전중후 사진첩, 품질 및 방염 시험 성적서 등을 일체 제출받아 설계도서와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사후 검토하여야 한다.
- 나. 사후 검토 및 현장 육안 점검 결과, 설계 기준 미달, 저급 자재 사용, 국산 목재 및 방염 기준 위반, 중대한 안전 및 구조적 결함이 우려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, 감리원은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을 강력히 지시하여야 한다.
- 다. 본 감리용역의 총 계약금액에는 기시공 현장에 대한 서류 검토, 사후 현장 확인 및 보완 지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며, 과업수행자는 감리 계약 체결 이전의 시공분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, 이를 빌미로 발주기관에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.

4. 준공 단계 감리 업무

- 가. 착수 신고 :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리용역 착수계, 감리업무 수행계획서, 감리원 선임계 및 자격증명서, 예정 공정표,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 착수 신고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수시 보고 : 공사 진행 중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, 현격한 공정 지연, 수혜기관과의 마찰,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대책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다. 정기 보고 :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현장별 감리 수행 현황, 공정률, 주요 지적 및 조치 사항 등을 종합하여 익월 5일까지 월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수시 및 정기 보고

가. 예비 및 최종 준공검사 :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계를 제출하기 전 현장을 확인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려야 한다. 이후 최종 준공검사 시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면, 시방서, 본 과업지시서에 맞게 시공이 완벽히 완료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.

2. 최종 성과품 제출

과업수행자는 전체 현장의 준공 처리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다음의 성과품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.

가. 최종 감리완료보고서 인쇄물 2부

나. 상기 보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일체가 수록된 디지털 저장매체(USB) 1개

다. 성과품 포함 내용 : 감리 완료 보고서 본문, 수혜기관별 현장 감리 일지 및 감리 기록 대장,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대장, 자재 품질시험성과 및 방염필증 총괄표, 국산 목재 증빙 서류 모음, 공사 전중후 사진첩 등

3. 문서의 보관 및 보안

가. 과업수행자는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문서, 사진, 도면 등을 과업 종료 후에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

나.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통해 취득한 발주기관 및 수혜기관의 제반 정보, 개인정보, 사업 예산 내역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을 감수한다.